#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35

발의연월일: 2024. 10. 16.

발 의 자:한병도·이정헌·박홍배

박민규 • 박수현 • 김병기

김교흥 • 허종식 • 김영배

이기헌 · 정태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항공 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 월 31일까지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과세하고, 해당 항 공기 취득일 이후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면서 자산총액 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 로만 재산세 경감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운송사업은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 업으로서 고용창출효과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미국이나 중국 등 세계 주요 경쟁국은 사업용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해외 주요 항공사와 경쟁하고 있는 국내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이상의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본문 및 단서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과세특례)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	
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u>2024년</u> 12월 31일까	<u>2029년</u>
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	
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	
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	
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	
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u>2024년</u> 12	<u>2029년</u>

위	31일까지	겨 가 <del>하</del> 다.
띨	31 월 까지	경유안나

-----.